

제 208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거창시과테마파크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거      창      군

(농업기술센터)

#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5~
----------	-------

제출일자 : 2015.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요구이유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관리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거창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나. 위 치 : 고제면 봉계리 525-1

다.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 부 내 역	비고
체험(과원)시설	7ha	- 사과과원(1.5ha) - 오미자과원(0.25ha) - 공원시설 및 기타(5.25ha) - 관리동 1동(207㎡)	

라. 위탁대상 사무

- 과원시설 (사과, 오미자과원) : 사과나무분양, 꽃나들이축제, 수확행사 등
- 공원시설 : 예취작업, 수목관리, 쓰레기수거 등 공원 주변환경정비
- 관리동 및 기타부속시설 유지관리

마.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내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 없음

(시설사용료를 매년 12월말까지 경영비를 제외한 30% 거창군에 납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나. 그간추진현황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15. 2. 11 ~ 2. 17(7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15. 2. 25.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 25.

다. 향후계획

- 위·수탁계약 체결 : 2015. 3월초
- 위탁운영 시설점검 : 2015. 3월초
- 수탁단체 위탁운영실시 :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17. 12. 31

라.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위탁운영 계획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의 만료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 I 위탁법적근거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II 위탁시설현황

- 사업위치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 부 내 역	비고
체험(과원)시설	7ha	- 사과체험장(1.5ha) - 오미자체험장(0.25ha) - 공원시설 및 기타(5.25ha) - 관리동 1동 (207m <sup>2</sup> )	

## I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17. 12. 31 (재계약가능)
- 위탁대상 업무
  - 과원시설(사과, 오미자과원) : 사과나무분양, 꽃나들이축제, 수확행사 등
  - 공원시설 : 예취작업, 수목관리, 쓰레기수거 등 공원 주변환경정비
  - 관리동 및 기타부속시설 유지관리
- 수탁기관 모집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지

- 위탁조건
  - 공공시설로써 건립목적에 적합하게 나무분양, 꽃축제, 체험행사, 홍보등 가능한 단체
  - 수익금의 일부는 거창군 사과발전과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사용료는 매년 12월까지 경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30% 납부
- 선정기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공익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

#### IV 그간 추진현황

- 모집공고 : 2015. 2. 11
- 공모접수 : 2015. 2. 11 ~ 2. 17 (7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15. 2. 25.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
- 심의회 개최 및 수탁단체 선정 : 2015. 2. 25.

#### V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협약체결 : 2015. 3월초
- 위탁운영 시설점검 : 2015. 3월초
- 수탁단체 위탁운영실시 :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17. 12. 31

#### VI 기대효과

- 거창사과의 우수성 적극 홍보 및 관광도시로써 거창 브랜드 인지도 향상 기대
- 지역의 새로운 관광벨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 계 법 령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5조 (운영위탁)

-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

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

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